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전면시행

국세청이 오는 8월부터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전면시행에 나선다.

기업은 세법에 따라 세금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잘못 적용했을 경우 가산세까지 붙어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

때문에 중소기업계에서는 받을 수 있는 공제임에도 혹여라도 세금 더 낼까봐 감면 신청조차 하지 않는 일이 많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2020년 7월부터 매출 100~1000억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세무컨설팅에 나서고 있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8월부터 전면시행에 나선다.

기존에는 국세청과 중소기업이 협약을 맺어야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지만, 8월부터는 신청만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협약기간(1~2년) 중 전 세목을 대상으로 하던 컨설팅을 세액공제·감면 위주 컨설팅으로 보다 초점을 좁혔다.

컨설팅 신청기간도 제한된 기간에서, 감면 적용 사유가 있을 경우 또는 감면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 바꾸어 사실상 기간 제한을 없앴다.

컨설팅 시기도 정기 또는 수시로 진행되던 것이 신청한 날 다음 달 말일까지 집중컨설팅을 제공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모바일 홈택스, 현금영수증 알림 체크하고 연말정산 받으세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오는 29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개통한다.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에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한 후 알림 수신 동의를 하면 현금거래 다음날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사비 등 금액이 큰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아 납세자가 손실을 보게 된다.

사업자 역시 착오·누락으로 인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차후 미발급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1천200만원 넘는 모든 근로자 소득세 감소"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과표) 2개 구간을 상향조정하면 과표 1천200만원이 넘는 모든 근로자·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예정에 없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5천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씩 올리기로 한 조치가 이들 계층에만 감세 효과를 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현행 소득세는 누진세율 계산법에 따라 계산된다. 총급여가 8천만원인 사람이 있다면 이들의 최종 과표가 속하는 4천600만~8천8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 24%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표 1천200만원 이하 구간에선 6%,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에선 15%, 4천600만~8천800만원 이하 구간에선 24%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소득세 과표 조정이 기존 과표 1천200만원을 1천400만원으로, 4천600만원을 5천만원으로 올리다 보니 이들 세율 구간을 포함한 과표 1천200만원 이상 근로자는 모두 혜택을 보는 것이다.

정부는 과표 1천400만원(총급여 3천만원)의 납부세액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8만원, 과표 5천만원(총급여 7천800만원)은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과표 5천만원 이상자는 세 부담이 일률적으로 54만원씩 감소한다. 다만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조정해 세 부담 감소 폭이 24만원으로 줄어든다.

납부세액이 '0원'인 과세미달자와 과세표준 1천200만원 이하자는 과표 개편의 수혜가 없다. 대신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확대 등 다른 세제 개편의 혜택은 받는다.